**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217호**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6호, 2025.11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**2026년 10월 19일**
**보건복지부장관**

##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고시안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요양급여비용의 명세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

| 유형별 분류 | 점수당 단가 |
|---|---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| 84.7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 | 85.3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| 96.5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| 103.5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| 107.3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| 196.2원 |
|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| 109.4원 |
|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| 101.3원 |

## 부 칙

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</td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td></tr>
<tr><td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</td><td><삭 제></td></tr>
<tr><td><신 설></td><td>제2조(요양급여비용의 명세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</td></tr>
<tr><td>
<table>
<tr><th>유형별 분류</th><th>점수당 단가</th></tr>
<tr>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>83.8원</td></tr>
<tr>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</td><td>84.2원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유형별 분류</th><th>점수당 단가</th></tr>
<tr>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</td><td>84.7원</td></tr>
<tr><td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</td><td>85.3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| | |
|---|---|
|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 |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| 95.6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| 101.1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| 104.3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| 185.1원 |
|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| 105.5원 |
|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| 98.6원 |

| | |
|---|---|
|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 |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| 96.5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| 103.5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| 107.3원 |
|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| 196.2원 |
|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| 109.4원 |
|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| 101.3원 |